

# 글로벌인문융합연구센터 규정

시행: 2022. 09. 01.

현대에 이르러 학문의 분화가 심화되고 학문 간의 대화와 연계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학문들의 전문화, 고립화 경향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사태를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융·복합적인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학문 간의 학제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고 이제까지의 학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려가 없었기에 융합연구는 대부분 실용적인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본 센터는 융합연구에 대한 철저한 인문학적인 성찰을 토대로 융합연구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해명하고, 이를 토대로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사회과학간의 학제적인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융합연구의 참된 방향과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처 부설 ‘글로벌인문융합연구센터’ (Center for Global Converging Humanities, 이하 “본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센터는 다양한 학문분야 간의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연구 분야 및 주제의 창출, 확산에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 본 센터는 본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회의 개최
2. 정기 세미나 및 토론회
3. 공동저서, 학술지 및 웹진 발간
4. 타 연구소 및 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5.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연회 개최
6. 기타 센터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제5조(구성원) 본 센터는 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1. 연구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대학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2.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다.

#### 제6조(센터장)

1.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센터장의 추천 및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4. 센터가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 조건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기간 동안 센터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제7조(기구) 본 센터는 연구 활동과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은 센터 구성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1. 융합연구팀
2. 연구확산팀
3. 사업관리팀

제8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촉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센터의 조직
  - 나.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 다. 센터의 연구방향 조정
  - 라. 예산 및 결산
  - 마. 센터의 제 규정의 개폐
  - 바. 구성원 임용에 관한 추천 및 심의 의결
  - 사.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센터 규정의 제정에 관한 건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연구비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수입

제10조(연구비 집행)

1. 교내연구비의 집행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2. 대외연구비의 집행은 주관 기관의 집행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회계)

1.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은 본교 교비 예산에 포함·편성하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관련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